

언어관련 서비스 및 특수교육 뉴욕시

귀하가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라면, 귀하는 그 아동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번역서비스(서류 상의 내용을 귀하의 언어로 바꿔주는)와 통역서비스(구두로 전해지는 내용을 귀하의 언어로 바꿔주는)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설립 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와 위원회들(CSEs)은 서류를 번역할 책임이 있으며, 부모와 뉴욕시 교육청(DOE) 관계자들이 회합을 할 때에는 통역인들을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DOE 는 이러한 서비스를 귀하에게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며, 그러한 회의에 통역자를 데려오도록 귀하에게 요청하거나 강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그러한 회의에 통역을 위해서 성인인 친구 또는 친척을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DOE 는 어린이를 통역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역

귀하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귀하의 주 언어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평가에 관한 동의 통보문:** 이 서한은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귀하의 자녀를 평가 또는 검사하기 전 귀하의 허락을 바라는 경우 학교는 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귀하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회의 통보문:** 이 서한은 회의일자가 정해졌음을 귀하에게 알려줍니다.
- **평가 리포트:** 이 리포트들은 귀하의 자녀가 학습과 관련된 장애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와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지에 대하여 DOE 가 실시한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 **추천에 관한 최종 통보문:** 이 서한은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하여 DOE 가 무엇을 변경할 계획인지를 이에 대한 사항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이 서류는 귀하의 자녀가 받게될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 **성적표/평가 리포트:** 이들 서류는 귀하의 자녀가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절차적 보호 통지문:** 이 서류는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될 수도 있는 자녀의 부모로서 귀하에게 주어진 권리를 설명합니다.
- **중재 합의서:** 이것은 귀하와 DOE 간의 회의(“중재 시간”)를 통해 작성되는 법적 합의서이며,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이견을 귀하가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설명합니다.
- **분쟁해결 합의서:** 이것은 공정한 심의가 열리기 전에 귀하와 DOE 간의 회의(“분쟁해결 시간”)를 통해 작성되는 법적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이견을 귀하가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설명합니다.

- **공정한 심의 결정서:** 귀하와 DOE 가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동의에 이르지 못하면(중재 또는 분쟁해결 시간을 통해서도), 귀하의 자녀가 DOE 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할 공정한 심의의 심의담당관에게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공정한 심의가 종료된 후에 심의담당관이 작성하는 서면 결정서류입니다.

통역

귀하는 아래의 경우에 귀하의 주 언어에 능숙한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IEP 회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으로 불리는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설립, 토의 또는 검토를 위한 회의.
- **CSE 검토 회의:** 귀하 자녀의 IEP 를 CSE 와 함께 검토하는 회의. CSE 는 DOE 산하의 조직이며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중재 시간:** 귀하와 CSE 또는 학교,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과 함께 하는 회의.
- **분쟁해결 시간:** 귀하가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동의하기 위해 노력할 공정한 심의가 열리기 전에 귀하와 CSE 간에 갖는 회의.
- **공정한 심의:** 귀하와 CSE 가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동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열리는 심의이며, 귀하의 케이스는 귀하의 자녀가 어떤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 재판관처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정심의의 심의담당관에게 제출됩니다.

추가적 권리

귀하는 뉴욕 시내의 모든 부모들에게 발송되는 서류를 번역된 서류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 서류들은 귀하 자녀의 학교등록, 지원 그리고 선택에 관한 정보와 자녀의 학업성취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귀하는 자녀의 행동, 안전, 징계와 관련한 번역된 정보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또한 교육정책 회의를 위한 패널; 전시 영어학습생 부모 회의; 전시/커뮤니티 교육평의회 회의; 그리고 중앙사무국에서 주최하는 다른 전시 부모 회의들과 같은 시 전역의 회의등에서 통역인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 자녀의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교사 협의회(PTA) 에서도 통역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세요!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귀하에게 이같은 언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왔다면, 귀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학교에 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서한 또는 본 안내자료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New York Lawyers for the Public Interest 전화번호: (212) 244-4664 혹은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전화번호: (212) 822-9521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학교 또는 DOE 사무실에서 귀하가 요청한 서류들을 번역해주지 않으면, 귀하는 (212) 374-2323 으로 가정참여지원실(OFEA) 에 전화하거나, (212) 374-0138 로서한 복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